

의안번호	2208643
의 퇴 인	홍기원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1.
추계번호	25F126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99조의15 신설 (남북경제협력 중단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)	「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과세특례 규정 신설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99조의15 신설 (남북경제협력 중단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,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5·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신설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「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」(이하 “남북경제협력보상법안”이라 함)¹⁾ 제4조는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, 개성공단사

업 전면중단 또는 5·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 발생한 투자 및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개정안은 남북경제협력보상법안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해당 피해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,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5·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납세규모 및 이들이 지급받을 보상금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가용 정보가 미비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보상금 지급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피해자 수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
 - － 남북경제협력보상법안 제3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
 - － 남북경제협력보상법안 제4조는 보상금의 지급기준,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
 - 그러나 남북경제협력보상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·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, 현시점에서는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피해자의 범위 및 보상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